

기록연구 직렬 영어·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

1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	청각장애
토플(TOEFL)		PBT 530점	PBT 352점
		IBT 71점	-
토익(TOEIC)		700점	350점
텡스 (TEPS)	(2018. 5. 12. 이전에 실시된 시험)	625점	375점
	(2018. 5. 12. 이후에 실시된 시험)	340점	204점
지텔프(G-TELP)		65점(Level 2)	-
플렉스(FLEX)		625점	375점

※ 청각장애의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이거나,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(청각장애)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 [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「기록연구 직렬 영어능력검정 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]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6.1.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2016.1.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
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해당능력검정 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이 공고일부터 면접 시험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(☎061-260-0718)로 연락하여 사전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,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이 정확히 표기된 증빙서류를 **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**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
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기준점수(등급)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6.1.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
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**필기시험 합격자**에 한하여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이 정확히 표기된 증빙서류를 **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
기록연구 직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

1.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-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**장애인**으로 **유효하게** 등록되어 있으며, **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**하는 사람

- ① **‘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’인 사람**
- ② **‘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’인 사람**

- ☞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(**舊2·3급**)
- ☞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**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**

<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>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**장애인**으로 **유효하게** 등록되거나,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**상이등급 기준에** 해당되어 **유효하게** 등록·결정된 자

2. 영어능력검정시험 제출 점수 기준

시험명	TOEFL(PBT)	TOEIC	TEPS		FLEX
			‘18.5.12. 이전시험	‘18.5.12. 이후시험	
기록연구	352	350	375	204	375

3. 제출서류

- ① 장애인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
- ② 의사진단서 원본*(의사 소견서 불인정)

*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
※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

- (의사진단서 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 - (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 -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①
 -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②
- 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38호)에 따라 검사
-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③

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-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평료도를 검사한 결과,
-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평료도가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4. 제출방법

- ① (제출대상 및 기간)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인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 및 진단서 원본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
- ② (인정기간)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서류 제출한 해당 시험에 한함

5. 유의사항

-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 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